## 모욕·폭행·상해·명예훼손

[서울서부지방법원 2014. 10. 30. 2014고정220,2014고정327(병합),2014고정341(병합)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신종곤, 김재일, 여경진(기소), 심강현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안혜미 외 1인

## 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벌금 1,500,000원, 피고인 2를 벌금 500,000원, 피고인 3을 벌금 700,000원, 피고인 4를 벌금 300,000원, 피고인 5를 벌금 300,000원, 피고인 6을 벌금 300,000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